

장애학생지원 규정

- 제정 : 2011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8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 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함.
2. “장애학생” 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함.
3. “교육·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 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함.

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

제3조(조직) ① 본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- ③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,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지원센터에는 직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서비스
2. 장애학생 상담
3.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

6-1-3 장애학생지원 규정

4.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
5.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
6. 장애인식개선 교육

제 3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

제5조(신상자료 관리) ①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한다.

②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고) 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,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(심화)되어 유형,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장애학생을 신고받은 학과장은 즉시 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우선 수강신청)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는 중증장애,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.

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의별 수업운영 방식,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(장애학생 정보제공) ① 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 교수(강사)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수(강사)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수(강사)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.

제9조(장학금 지급)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지원) 지원센터는 관련부서 및 소속 학과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활용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한다.

제 4 장 대학생활 지원

제11조(동아리 활동)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충한다.

제12조(장애이해 프로그램)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진로지원)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학과와 협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14조(설치) 장애학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5조(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

제1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6.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1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6-1-3 장애학생지원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